

##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

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및 선결제식 지불 수단에 관한 내각부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
### 1.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규정의 취지

선결제식 지불 수단 보유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선결제식 지불 수단의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 현재 미사용 잔액의 반액 이상 금액의 발행 보증금을 법무국 등에 공탁함으로써 자산을 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
### 2.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 규정의 취지

만일의 경우 선결제식 지불 수단 보유자는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보전된 발행 보증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3. 발행 보증금의 공탁, 발행 보증금 보전 계약 또는 발행 보증금 신탁 계약의 구별

당사의 이용자 자금 보전 방법은 '금전에 의한 공탁'입니다.

### 4. 선결제식 지불 수단의 발행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이 없는 자의 지시가 행해져 발생한 이용자의 손실 보상 및 기타 대응 방침

'아타미 해안 자동차도 횡수 사용권'을 도난 또는 분실 등에 의해 제삼자가 이용한 경우,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아타미 인프라 매니지먼트 합동회사